

의안번호	제 404 호
의결 연월일	2016. . . . (제 회)

**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발의자	박봉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5월 31일

#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박봉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
제 출 자 : 박봉순, 박한범, 박종규  
임병운, 장선배, 최병운  
이종욱

## 1.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개정으로 ‘노인복지회관’의 명칭이 ‘노인복지관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, 위·수탁 관련사항 및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.
- 나. 위탁운영 관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음(다만, 수의 계약 시 두 번 이상 갱신 가능), 위탁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함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  - 재산 및 시설물 관리, 시설증개축 도지사승인,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등

라. 조사 또는 검사, 위탁의 취소, 수익사업, 자체운영규정 사항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마. 부칙

- 적용례 : 안 제6조제2항의 위탁기간 5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운영 하는 자부터 적용.
- 경과조치 : 종전의 위·수탁계약 사항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

3. 의안전문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- 30 호

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검토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, 교양, 여가활동,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노인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에 둔다.

**제3조(사업 및 기능)** 노인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
2.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
3.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의료 재활사업
4. 취미생활,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증진 사업
5.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

**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**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이용대상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강당, 교육실,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 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용료의 감면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
3.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**제6조(위탁운영 등)**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탁기관의 의무)**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

여하여야 한다.

2. 수탁기관은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3.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4.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5.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조사 또는 검사 등)**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탁의 취소)**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위·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
2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익사업)**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

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자체 운영규정)**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자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)** 제6조제2항의 위탁기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·수탁 계약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사용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 (이 용 료)	비 고
강 당	주간 1회 2시간	30,000원	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요금의 20% 가산  ·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
교 육 실 회 의 실		20,000원	
식 당	1인 / 1식	· 정식 2,500원 · 국수 1,500원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[제2조](#)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8.3.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삭제 <2011.6.7.>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](#)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5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**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54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“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### 제14조(사용료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[법 제27조제1항](#)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[제19조의5](#)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[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](#)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[법 제27조제2항](#)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

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“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